

# 전자출판은 과연 저작권의 위기인가

## 기존 출판방식 의존한 저작권법 실효성에 의문 제기

새로운 전자출판물과 서비스에 관련된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작년 가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 이후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 자리에 모인 국제출판인들은 나날이 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저작권과 출판사의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았다.

### 전자출판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문제

좀 더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이 구성된 국제출판사저작권자문위원회(IPCC)는 두 가지 당면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받았다. 첫째는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이라는 문맥 속에서 출판사의 투자와 저작권을 어떻게 적절히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둘째는 도서관과 출판사, 즉 공적인 부문과 사적인 부문의 관계가 전자미디어시대의 도래와 함께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IPCC를 구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출판인협회(IPA)와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인모임(STM)은 출판사의 역할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좀 더 강화된 법적보호장치를 필요로 하는 핵심측면으로서 출판사의 점증하는 창조적인 역할을 집중적으로 연구 보고하기로 했다. 이것을 토대로 IPCC는 출판사의 창조적인 역할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IPCC 위원장 찰스 클라크가 제출한 기초보고서는 출판사 및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출판사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제까지의 움직임의 배경과 함께 “출판사의 창조적인 역할에 담긴 법적 함의”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좋은 출발점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IPA 국제위원회 회원국들은 자국 입장을 정리하여 빠른 시일 안에 IPCC에 보고하기로 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의 올해의 주제국 가 일본실에는 막강한 첨단 출판기술들이 선을 보였다. CD-ROM을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책인 소니의 데이타디스크맨, 광섬유와 통신위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전자인쇄출판에 응용된 고품위텔레비전(HDTV), 자동번역시스템 ATLAS, 오디오 기능을 갖는 새로운 퍼스널컴퓨터 등등.

IPA 회장 앤드류 닐리는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새로운 출판사들이 잠식해 들

어올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오디오북 출판사의 3분의 2는 모두 새로 이 분야에 뛰어든 출판사다. 소니의 데이타디스크맨은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자출판에 관한 한 미래는 코앞에 닥쳤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IPA의 전자출판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낙관하는 측에서는 미국시장에서의 오디오북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예로 들면서 기존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전자출판에 뛰어들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CD-ROM의 급속한 보급, 하드웨어 자격의 인하, 젊은 세대가 품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강한 호감을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출판업의 종말을 우려하는 위기감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몇 해 동안 IPA와 STM은 새로운 전자시대에서의 출판사의 법적인 위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특히 STM의 회원사들은 저작자가 갖는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를 출판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저작자의 저작에 출판사가 덧붙이는 가치에 대해 출판사가 어떤 보호를 요청할 때 국내법 및 국제법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클라크의 보고서가 “출판사의 창조적인 역할에 담긴 법적 함의”라는 아주 신중한 제목을 달고 있는 이유도, 출판사의 특별한 권리라는 것이 규정하기가 아주 막연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오해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현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출판사들은 독자적인 자구책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 기존 출판방식, 저작권법 왜해의 위기

출판사들이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상은 전자도서관이다. 전자도서관을 명확하게 개념정의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정보를 컴퓨터시스템에 넣고, 구조화하고, 꺼내고, 조작하고, 전송하고, 배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전자도서관으로 상징되는 정보혁명은 단순히 컴퓨터가 종이를 대신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는다. 즉, 최종사

### 선진 제국의 많은 출판사들은

#### 기존의 출판방식과, 그들이 이제까지

#### 의지해온 저작권법이 전자출판의

#### 본격화로 일시에 왜해될지도 모른다는

#### 불안을 갖고 있다.

#### 예컨대, 그들은 전자도서관의 방대한

#### 네트워크 속에서 자료들이 이동되고

#### 주물러지고 재구성될 경우,

#### 이에 대한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 있는가를 심각하게 반문한다.

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정보의 내용은 물론, 그것의 체재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출판사들은 기존의 출판방식과 그들이 이제까지 의지해온 저작권법이 일시에 왜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갖고 있다. 전시회 기간 중에 열린 STM 연례총회에서 의장인 사라 피네건은 “프랑스의 야심만만한 국립전자도서관계획, 현재 일본이 200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들고 있는 네트워크, 미국이 구상중인 전국고속네트워크망은, 저작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방대한 자료가 이들 네트워크 안에서 이동되고, 주물러지고, 조작될 때, 이 재구성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했다.

이런 근본적인 변혁에 대해 특히 STM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출판사가 자사의 정보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개별 출판사들이 저작자 및 자신의 권리 를 관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복제권기구(reproduction right organization)들이 일괄허가(collective licensing) 같은 방식으로 거래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그때그때의 사용이 자동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계약을 따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저작물을 전산화할 수 있는 독점권만 국내법 및 국제법상으로 일률적으로 보호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

적 형태복사(photocopying)의 저작권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공정한 사용, 개인적 사용에 대한 예외조항의 도입에도 거부감을 나타낸다.

#### “네트워크 정보자료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도서관과 출판사는 이제까지 비교적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런 안정성이 깨트려질 것으로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도서관과 연구소의 유기적인 정보네트워크의 확산과 함께 도서관이 정보공급의 창구역할을 떠맡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특히 과학전문출판사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법복제를 적발하기가 무척 어려운 서적형태복사와는 달리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누가 언제 사용했다는 기록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전화요금을 생각하면 된다. 몇 해 전 미국의 몇몇 STM 계열 출판사들은 실험적으로 ADONIS라는 정보공급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25개사에 이르는 이 컨소시엄은 그들이 내는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들을 CD-ROM에 담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받는 수수료에는 개개의 저작권자들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 미국의 일부 출판사들은 그런 전자도서관 형태의 자료이용이 사용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책의 판매, 잡지의 구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계획에 착수했다. 스텝포드대 베크먼연구소는 의학잡지를 전부 수록한 전자네트워크를 개발중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인쇄된 저널과 비교했을 때 연구자들이 사용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장단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보는 전자도서관과 관련된 출판사의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복제권기구도 나름대로 전자출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출판사측에서는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면서 복제권기구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발언권을 가지려면 최종 사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는 서적형태복사와는 달리 전자복사는 출판사의 1차적인 시장이며 따라서 최종사용자들을 좀 더 확실하게 통제하고 모니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外紙에서〉